

# 예 산 총 칙

2018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56,871,000	10,706,130
일반회계	347,500,000	10,425,000
특별회계	9,371,000	281,130
기타특별회계	9,371,000	281,130
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	539,000	16,170
수질개선특별회계	916,000	27,480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,033,000	30,990
주차장특별회계	6,883,000	206,49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"채무부담행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"계속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"명시이월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018,872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조직변경 조례(안)이 동일 회기내에서 동시에 의결되었을 경우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 운용

※ 의존재원 표시

국비→국, 지역발전→지, 기금→기, 시비→시, 특별교부세→교, 특별교부금→특